

[사 건 명] 행심 2017 - 21

학교폭력 가해에 따른 처분 취소 청구

□ 청구인 : ◇◇◇

□ 피청구인 : ○○○○초등학교장

[주 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7. 06. 05. 청구인에 대하여 한 학교폭력 가해에 따른 학교봉사 5시간 처분을 취소한다.

[재결이유]

I. 사건개요

- 가. 2017. 3월부터 청구인 및 같은 반 3명의 학생 등이 피해학생 ■■ ■가 싫어하는 별명(땅크, 탈모, 하지모, 간질모, 된장모, 쌈장모 등)을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만들어 놀렸다.
- 나. 2017. 05. 18. 학교폭력사안으로 접수되어 2017. 05. 22. 학교폭력 전담기구에서 사안에 대해 조사한 후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 회부되었다.
- 다. 2017. 06. 01.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서 청구인에게 학교봉사 5시간 및 특별교육이수 4시간, 가해학생 및 학부모 특별교육 5시간 처분조치 하였다.

II. 청구인의 주장

청구인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주장한다.

- 가. 피해학생 측에서 처벌을 원치 않으며, 청구인이 처음이고 반성하는 점을 감안한다면 과분한 처분을 받았다.
- 나. 청구인은 친구들끼리 별명을 부르고 놀았는데 친구가 싫어할 때 멈추지 못한 점을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이후 친구들이 싫어하는 별명 및 단어들을 조심해서 사용하고 있으니 처분을 감경해 주길 바란다.
- 다. 경제활동 중인 학부모에게 평일 5시간 특별교육이수는 매우 곤란한 처분이며, 아이에게 더운 여름철 청소예, 추가 상담까지 가중된 처분을 받았다.

III. 피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 가.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처분 조치하였으며, 더 높은 처분도 가능하였으나 처벌이 아닌 선도가 우선인 점, 이런 과정을 처음 경험하면서 가해학생들이 반성할 것으로 기대가 되는 점 등을 감안하여 처분 조치하였다.
- 나. 해당 사안이 피해학생을 집단적으로 따돌린 것임에도, 학부모로서 그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어, 학부모 특별교육은 반드시 필

요한 조치이다.

- 다. 청구인은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 참석하지 않고 서면의견서로 대신하였는데 의견서에서 본인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부분이 미약하여 봉사활동이나 특별교육이 필요한 처분조치이다.

IV.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1. 처분근거 법령

- 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7조
- 나.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 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 제17조

2. 인정사실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와 답변서 및 증거자료, 피청구인의 구술심리결과(청구인은 불출석) 등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청구인, ■■■■■, ○○○, △△△ 등은 2017. 3.경부터 2017. 5.경 학교폭력으로 신고 될 때까지 쉬는시간, 점심시간, 수업시간 등 학교에 있는 동안 지속적, 반복적으로 피해학생이 싫어하는 별명(땅크, 탈모, 하지모, 간질모, 된장모, 쌈장모 등)을 만들어 부르며 피해학생을 괴롭혔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에 대한 판단

가. 청구인의 행위가 학교폭력에 해당하는지 여부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르면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협박, 약취,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하고, “따돌림”이란 학교 내외에서 2명 이상의 학생들이 특정인이나 특정집단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속적이거나 반복적으로 신체적 또는 심리적 공격을 가하여 상대방이 고통을 느끼도록 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청구인이 ■■■■■, ○○○, △△△ 등 다른 학생들과 함께 피청구인이 싫어하는 별명을 지속적, 반복적으로 부른 것은 모욕 및 따돌림에 해당하고 이로 인해 피해학생이 정신적인 피해를 호소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행위는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정하는 학교폭력에 해당한다. 학교폭력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해서는 청구인도 다투고 있지 않다.

나. 이 사건 처분의 위법, 부당 여부 (재량권 일탈, 남용여부)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교육을 위하여 가해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것을 학교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 동법은 학교폭력의 예방과 대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피해학생의 보호, 가해학생의 선도·교육 및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간의

분쟁조정을 통하여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고 학생을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바, 가해학생에 대한 보호조치 또한 피해학생의 보호 및 가해학생의 선도와 교육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하여야 한다. 동법 시행령 제19조는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는 가해학생이 행사한 학교폭력의 심각성·지속성·고의성, 가해학생의 반성 정도, 해당 조치로 인한 가해학생의 선도 가능성, 가해학생 및 보호자와 보호자 간의 화해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본건은, 여러 학생들이 피해학생을 약 2개월 동안 지속적, 반복적으로 좋지 않은 의미의 별명을 불러 놀리고 괴롭힌 것으로 모욕, 집단 따돌림에 해당하고 사안이 결코 가볍지 않다.

피청구인은, 가해학생 조치별 세부기준에 따라, 심각성 낮음(1점), 지속성 보통(2점), 고의성 보통(2점), 반성정도 높음(1점), 화해정도 매우 높음(0점)으로 판단하였고, 합계 6점에 해당하는 제3호 교내봉사 처분을 하면서 그 시간을 하루 1시간씩 5일로 하였다. 학급교체 등 더 높은 처분도 가능했을 것으로 보이나, 처벌보다는 선도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하고, 가해학생들이 처음 겪는 이러한 과정을 통해 충분히 반성할 것을 기대하여 교내봉사 처분을 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교내봉사 5시간 처분은 재량권 범위 내에서 법률에 따라 내려진 것으로 위법, 부당함이 없다.

청구인이 학교폭력자치위원회에 제출한 서면의견서를 보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태도보다는 부모님에 대한 죄송한 마음이나 억울한 마음이 더 강하게 느껴져, 청구인에게 특별교육이 필요해 보인다. 청구인의 학부모도, 본 건이 모욕, 집단적 따돌림에 해당하는 학교폭력 사안임에도, 그 심각성과 피해학생이 받았을 고통에 관해 충분히 인지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여, 특별교육이 필요해 보인다. 따라서 청구인 및 청구인의 보호자에 대한 특별

교육 5시간은 재량권 범위 내의 적법, 타당한 처분이다.

다. 결 론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의 청구인의 행위는 학교폭력에 해당하고, 이 사건 처분은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것으로 적법, 타당하다.

V. 결 론

청구인의 주장은 모두 이유가 없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